

## 교무위원회규정(4-4-2)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건양대학교(이하 “본 대학교”라 한다) 학칙 제14장에 의거 설치되는 교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교무위원회는 총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당연직으로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단과대학장, 처장, 산학협력단장, 정보화책임관(CIO)을 당연직으로 하며, 임명직은 총장이 교직원 중에서 추가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개정 ' 97.9.3., ' 03.1.8, ' 07.3.5., 2018.04.25)

제3조(직무) 교무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괄한다.

제4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의 경우 해당 보직기간으로 하며, 임명직 위원의 임기는 임명일로부터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개정 2018.04.25.)

제5조(소집) 교무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총장이 소집한다.(개정 ' 95.6.7., 2018.04.25.)

제6조(의결 정족수) 교무위원회는 재적위원 2/3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개정 2018.04.25.)

제7조(기능) 교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입학, 수료 및 졸업에 관한 사항
2. 학사력에 관한 사항
3. 학칙 및 제 규정의 제정과 폐지에 관한 사항
4. 대학발전계획 및 대학 학사개혁에 관한 사항
5. 대학평가에 관한 사항
6. 전공 정원에 관한 사항
7. 각종 위원회 설폐에 관한 사항
8. 기타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개정 95. 6. 7)

부 칙

이 규정은 199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4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5년 6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1997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0년 3월 2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3년 1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07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개정 규정은 2018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